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5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2. 3.)

상정 ·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3. 11.)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서범수)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도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시기 규정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023년말 기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대규모개발사업 130개 지구에서 1,35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41개 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완료하였는바,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1,353개 세부사업 중 833개 세부사업을 완료(이행률 61.6%)하고 520개(공사중 139, 미착공 381) 세부사업을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총 49개 사업 중 12개 사업만이 이행완료되어 24.5%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이 지연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 완료 전에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이는 철도사업의 경우 개선대책 확정 이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발사업

을 완료하기 이전에 이행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불법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